

##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

###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02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: 2022. 9. 30.

제출자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#### 1. 개정이유

「지방재정법」과 조례에서 정한 민간위원과 공무원 위원 구성 비율에 맞게 위원수를 조정하고, 법제처 ‘알기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’에 의거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

#### 2. 주요내용

가. 지방재정법에 따른 용어 정비(안 제2조)

나. 당연직 위원 변경(안 제3조)

다. 법제처에서 발간한 ‘알기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’에 따라 조항·조문 정비(안 제1조부터 제10조까지)

#### 3. 개정조례안 및 신·구조문대비표: 따로 붙임

#### 4. 근거법규: 따로 붙임

-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, 제37조의2, 제60조

## 5. 참고사항

가. 예산조치사항: 해당사항 없음

나. 규제사무심의: 해당사항 없음

다. 성별영향평가: 개선사항 없음(가족복지과-3700호, 2022. 8. 31.)

라. 입법예고: 2022. 8. 22. ~ 9. 13.(23일간) / 의견없음

마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따로 붙임

##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

###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에서 위임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의 제목 “(기능)”을 “(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”을 “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”으로, “자문 또는 심의한다”를 “자문·심의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”로 하며, 같은 항 제5호 중 “적적성”을 “적정성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8호 중 “울산광역시 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”을 “구청장”으로 한다.

제3조의 제목 “(구성)”을 “(위원회 구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“및 부위원장 각”을 “1명과 부위원장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 후단을 “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에 따른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“행정지원국장, 복지환경국장, 안전도시국장”을 “복지환경국장, 기획예산실장”으로 한다.

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제5조 및 제8조로 하고,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5조(중전의 제4조)의 제목 “(위원장의 임무등)”을 “(위원장의 직무)”로 한다.

제6조의 제목 “(운영)”을 “(위원회 운영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개의”를 “개의(開議)”로 한다.

제8조(중전의 제5조)제1항 중 “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으로 한다”를 “둔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.

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, 제37조의2 및 제60조에 따라 지방재정계획 수립, 투자심사, 재정운용상황의 공시 등에 관한 사항의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에서 위임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
<p>제2조(기능) ①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~ 4. (생략)</li> <li>5. 재정공시 내용의 적절성, 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</li> <li>6.·7. (생략)</li> <li>8. 그 밖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</li> </ol> <p>② (생략)</p>	<p>제2조(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)</p> <p>① ----- 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 이라 한다)은 ----- 자문·심의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를 둔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~ 4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5. ----- 적정성-----</li> <li>6.·7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8. ----- 구청장-----</li> </ol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이 경우 「양성평등기본법」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.

②·③ (생략)

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당연직 위원 : 미래전략국장, 행정지원국장, 복지환경국장, 안전도시국장

2. (생략)

<신설>

제4조(위원장의 임무등) ①·② (생략)

제5조(간사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으로 한다.

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

제6조(운영) ① (생략)

제3조(위원회 구성) ① ----- 1 명과 부위원장 ----- .

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에 따른다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 .

- 1. ----- 복지환경국장, 기획예산실장

2. (현행과 같음)

제4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5조(위원장의 직무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제8조(간사) ① ----- 둔다.

②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.

제6조(위원회 운영) ① (현행과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9조(수당과 여비)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「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같음)

② -----  
----- 개의(開議)-----  
-----  
-----.

<삭 제>

<삭 제>

## 근거법규

### □ 「지방재정법」

제33조(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) ⑨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. <개정 2014. 5. 28.>

⑩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14. 5. 28.>

제37조의2(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) ① 투자심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. 다만,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 1. 12.>

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(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)과 공무원(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)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,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. <신설 2021. 1. 12.>

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<신설 2021. 1. 12.>

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<신설 2021. 1. 12.>

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. <신설 2021. 1. 12.>

1.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

2.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·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

⑦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 <신설 2021. 1. 12.>

⑧ 위원은 제6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.

##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

##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# 1. 미첨부 근거규정

- 「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4호
  - 조례 등의 내용이 선언적,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#### 2. 미첨부 사유

-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은 위원회 구성의 당연직 위원 인원 조정에 관한 것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함.

#### 3. 작성자

- 소 속: 기획예산실
- 직 급: 지방행정주사보
- 성 명: 이현주
- 연락처: (052)290-3073